2023년도 스마트공장 AS지원사업 공고(1차)

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활용도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「2023년도 스마트공장 AS지원사업(1차)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3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

1. 사업개요

□ 사업목적

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을 대상으로 부품교체,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
 등 운영 애로사항 해결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 활용도 제고

□ 지원규모 및 조건

○ (지원규모) '23년 7,000백만원, 350개사 내외

구분	모집방법	차수(시기)	지원규모(목표)
اره (م	정기모집	1차(3월)	지원규모 대비 70%(210개사) 내외
AS지원		2차(5월 예정)	지원규모 대비 30%(90개사) 내외
긴급AS	수시모집	1차 공모~ 예산 소진시까지	50개사 내외

※ AS지원 ↔ 긴급AS 간 신청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원규모는 변경(조정)될 수 있음

○ (지원조건) 소요비용의 50% 지원 (최대 20백만원)

지원구분	정부지원금 한도	사업기간	접수형태
AS지원	최대 20백만원	4개 월	정기모집 (신청기간)
긴급AS	(총 사업비의 50% 이내)	(연장 2개월)	수시모집 (예산 소진시까지)

※ 사업기간 연장 신청 및 승인을 통해 최대 2개월까지 연장 가능 [최대 사업기간 6개월(4+2개월)을 초과한 사업수행은 불가]

2. 지원내용

□ 지원내용

지원유형	지원내용		
	▪ 스마트공장 운영과 관련된 HW(부품 등) 및 SW(솔루션 등)의		
	고장·결함에 대한 신속한 AS		
AS지원	■ 스마트공장 도입 후 발생되는 생산품목 변경, 공정 개선, 생산		
(정기모집)	효율성 개선, 보안강화 등에 필요한 HW 및 SW 업그레이드		
	• 역량강화 교육, 도입장비 및 솔루션에 대한 사용법 전수,		
	기능개선 등 활용도 제고		
 긴급AS	■ 스마트공장 운영과 관련된 HW(부품 등) 및 SW(솔루션 등)의		
(수시모집)	고장·결함에 대한 신속한 AS		

- ※ 긴급AS는 상시 접수 및 현장평가를 통해 선정·지원
- ※ 지원유형 구분없이 당해 연도 AS지원 또는 긴급AS 중 1개 유형만 신청 가능하며, 선정평가 결과 탈락한 경우는 추후 재신청 가능 (예시: AS지원 신청기업은 최종 선정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에 긴급AS에 신청 불가)
- ※ AS지원은 긴급AS에 해당하는 고장·결함 수리를 포함하여 지원이 가능하나, 긴급AS는 고장·결함 수리 외 업그레이드 및 활용률 제고 등은 지원 불가
- ※ ^①공급기업과 기 체결한 유·무상 하자보수 계약 내용, ^②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 사업에 참여한 공급기업과의 하자보수 계약 내용에 해당하는 항목은 지원 불가

□ 지원범위

-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 사업을 통해 도입한 HW, SW 및 솔루션 (MES, ERP, PLM 등)에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부속 부품
- 기업 자체역량(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 사업 미참여)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은 도입한 솔루션(MES, ERP, PLM등) 및 솔루션과 연동된 HW, SW에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부속 부품
- 스마트공장 사용법 전수, 기능개선 등 활용률 제고 분야는 아래 지원내용 중 선택하여 수행

지원항목	지원내용
프로그램 수정·개선	◆ 수정 프로그램 업무분석 및 설계 ◆ 수정 프로그램 개발 ◆ 공정 코드 추가 및 에러 수정 ◆ 화면 UI 수정
시스템 유지관리	◆ 공정 개선, 생산품목·원자재 변경, 담당자 변경 등에 따른 대응 지원 등 ◆ 공정, 생산장비, 원자재 등에서 발생한 제조데이터의 원활한 수집(센서, 데이터 수집장치 설치 등)과 분석·활용 지원
데이터 관리	 ◆백업 및 문제 발생 시 복구 지원 ◆ 입력 오류 데이터 검증 및 수정 작업 지원 ◆ 대량 데이터 일괄 입력(품목정보, 공정정보, 단가, 입출고 정보 등) ◆ DB 최적화
사용자 운영 지원	◆시스템 운영 애로 해결 지원 ◆사용자 교육 지원 ◆각종 데이터 분석 및 활용방안 지원 ◆단말기, 스캐너, 바코드 등 HW 사용 에러 해결 및 수리 지원
기타	◆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스마트공장 활용률 제고에 필요한 사항(요건검토 결과에 따라 진행 여부 결정)

※ 지원불가 항목(예시)

- 1) 스마트공장 구축 범위와 무관한 내용 (예시 : 스마트공장과 무관한 프린터·스캐너 등 개별 전산장비 업그레이드, 사용자 PC 모니터 교체 등)
- 2) 임대 사용료, 기간이 정해진 라이센스형 소프트웨어 비용 (예시: 클라우드 서버 및 인터넷 이용료, 기간 단위 사용 보안프로그램, MS 오피스 등 일반 업무 SW 등)
- 3) 기타 검토를 통해 지원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항목 (예시:계측기가 부착된 생산설비 윤활유 교체(주기적 활동) 등 자체 투자가 적합한 항목 등)

3. 신청자격 및 방법

□ 신청자격

- [●]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완료한 중소기업 또는 ^②기업 자체역량(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 사업 미참여)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중「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^{*}」를 발급받은 중소기업
 - * '스마트공장 수준확인사업'의 수준확인 기관에서 발급 [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(smart-factory.kr)을 통해 신청 가능)]

□ 신청기간

- (AS지원, 1차) 2023년 3월 17일(금) ~ 4월 17일(월) 까지
 - 2차 모집은 5월 중 별도 공고 예정
- (긴급AS) 긴급한 고장·결함 수리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2023년 3월 27일(월) 부터 상시 접수(예산 소진시까지)

□ 신청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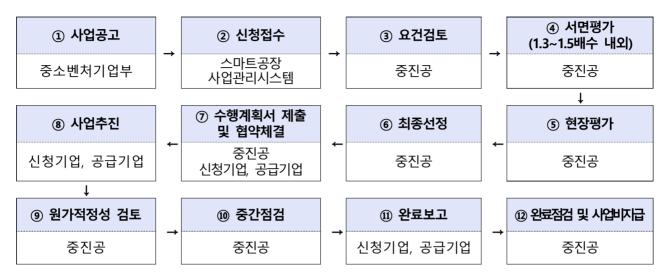
-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(smart-factory.kr)을 통해 온라인 신청
 - (AS지원) 사이트 접속 → 회원가입 → 사업안내 → 사업공고 → AS지원사업(AS지원, 정기모집) → 사업 신청(제출서류 업로드)
 - (긴급AS) 사이트 접속 → 회원가입 → 사업안내 → 사업공고 → AS지원사업(긴급AS, 수시모집) → 사업 신청(제출서류 업로드)

구분	온라인 제출 서류
1	스마트공장 AS지원사업 신청서
2	사업자등록증명원
3	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
4	개인(신용) 및 기업(신용) 정보 수집・이용・제공・조회 동의서
5	최근 3개년 국세청 홈택스 재무제표* 발급번호(신청서에 기재) * 재무제표 미보유 기업은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발급번호 기재
6	정부지원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: 사업 완료보고서 기업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: 수준확인서, 상세 구축 내역(SW, HW 등)

^{*} 제출서류 양식은 사업공고 하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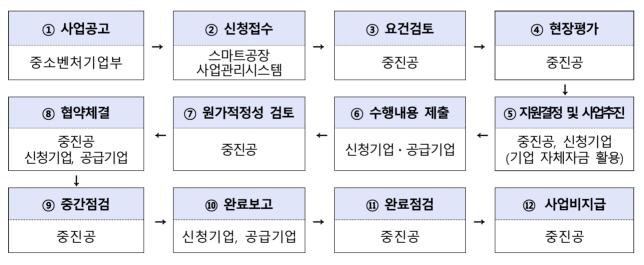
□ 지원절차

① AS지원 (정기모집)



- ※ ⑤ 현장평가 : 중진공·외부전문가 1~2인이 신청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 진행
- ※ ⑨원가적정성 결과, 기 체결한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중간점검 이전 협약변경 필수

② 긴급AS (수시모집)



- ※ 긴급한 고장·결함 수리는 현장평가를 통해 지원이 결정되면, 기업 자체자금을 활용하여 AS지원사업을 선 수행하고 이후 협약체결 및 완료점검 후 정부지원금 지급
- ※ ④현장평가 : 중진공·외부전문가 1~2인 신청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 진행 (대면평가 진행 불가한 경우 사안을 고려하여 비대면 평가 진행 가능)
- ※ ⑧ 협약체결 : ⑦원가적정성 결과, 산출원가와 제출한 수행내용(공급기업 견적금액) 중 낮은 금액 적용

4. 선정절차 및 평가항목

※ 평가, 선정, 협약일정 및 방법 등은 신청수요 등 상황에 따라 조정·변동될 수 있음

□ AS지원 (정기모집)

- ① (서면평가) 스마트공장 활용정도 등을 평가하여 6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지원예정 기업의 1.3~1.5배수 내외 현장평가 대상 선정
- ② (현장평가) 대상 적합성, 지원 적정성, 스마트공장 관리·활용 역량 등을 평가하며, 60점 이상인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선정
- ③ (최종선정) 현장평가 점수, 지역별 신청현황 및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 최종 선정

【 AS지원(서면평가) 】

	평 가 항 목	평가 등급				
구분		우수	양호	보통	다소 미흡	미흡
스마트 공장	○스마트공장 구축 내용 대비 활용 정도	15	12	9	6	3
공창 활용정도 (25)	○스마트공장 구축 후 애로 및 문제점의 해결 난이도 (자체 해결 가능 수준 확인)	10	8	6	4	2
	○ AS 요청사항 관련 문제점 제시/분석 구체성	10	8	6	4	2
AS 요청사항 (25)	○ AS 요청사항 관련 해결방안 제시/분석 구체성	5	4	3	2	1
(23)	○ AS 수행기간의 적합성	10	8	6	4	2
비용 적정성	○ AS지원 필요금액 산출내역의 구체성 및 사업 참여 적합성	10	8	6	4	2
(25)	○ AS지원 필요금액 산출내역 및 산출근거 신뢰성	15	12	9	6	3
기대성과 및	○ AS지원 후 향후 관리계획 적합성	15	12	9	6	3
관리계획 (25)	○ AS지원 후 기대성과 수준	10	8	6	4	2
	평가 점수					

【 AS지원(현장평가) 】

	평 가 항 목	평가 등급					
구분		우수	양호	보통	다소 미흡	미흡	
	○ (사업참여) AS 요청사항이 스마트공장 보급· 확산사업 지원설비 및 연속성을 가진 부속 부품인지 여부						
AS 대상	○(자체구축) 자체 구축기업은 AS 요청사항이 도입한 솔루션 및 솔루션과 연동된 HW, SW, 솔루션에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부속 부품인지 여부	사제 구축기업은 AS 요정사항이 루션 및 솔루션과 연동된 HW, 션에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부속		(O/×)	×)		
적합성 ○원가검증 결과 산출된 금액이 공급기업 견적 대비 낮을 경우, 낮은 금액으로 협약 변경 진행 인지 및 동의 여부							
	○AS 요청사항이 스마트공장 활용률 제고와 관련성이 있고 사업참여가 적합한지 여부	(○/×)					
	○AS 지원 수행기간의 적정성	15	12	9	6	3	
AS 지원 적정성 (40)	○ 스마트공장의 사후관리 추진의지 측정	15	12	9	6	3	
(13)	○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계획 수립의 구체성 측정	10	8	6	4	2	
	○경영진 및 전담인력의 관리·운영 보유 역량	15	12	9	6	3	
관리 및 활용 (45)	○데이터 수집 등 스마트공장의 활용 역량	15	12	9	6	3	
(10)	○성과지표 설정여부 및 관리·활용 노력	15	12	9	6	3	
지원성과 (15)	○스마트공장 활용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현장개선 효과	15	12	9	6	3	
	평가 점수						
평가 결과 (부적합 사항이 없으며, 평점 60점 이상인 경우 선정 검토)] 적합		☐ 부 [?]	턱합	

□ 긴급AS (수시모집)

○ (현장평가) 긴급복구 해당여부, 긴급복구 적합성 및 적정성, 관리 및 활용수준 등을 평가하여 모두 해당할 경우 지원 결정

【 긴급AS(현장평가) 】

구분	평 가 항 목	평가 결과(O,X)			
一	विश्व	적합(○)	부적합(X)		
긴급복구 해당여부	○AS 요청사항이 스마트공장 관련한 긴급한 고장 및 복구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확인	(○/×)			
	○ AS 요청사항이 긴급AS 지원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		/×)		
긴급복구 적합성	○ (사업참여) AS 요청사항이 스마트공장 보급· 확산사업 지원설비 및 연속성을 가진 부속 부품인지 여부				
	○(자체구축) 자체 구축 기업은 AS요청 사항이 도입한 솔루션 및 솔루션과 연동된 HW, SW, 솔루션에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부속 부품인지 여부	(○/×)			
 긴급복구	○AS 지원 수행기간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	(○/×)			
적정성	○ AS 요청사항이 기업 자체자금을 선 활용하여 수행 가능한지 여부	(○/×)			
관리 및	○ 경영진 및 전담인력의 스마트공장 관리·활용 노력이 있으며 지원효과가 구체적인지 여부		/×)		
활용 활용	○ 원가검증 결과 산출된 금액이 공급기업 견적 대비 낮을 경우, 낮은 금액으로 협약 변경 진행 인지 및 동의 여부	I .			
결과 판정	결과 판정 (7가지 평가항목이 모두 적합일 경우 지원 결정) □ 적합 □ 부적합				

5. 지원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

□ 지원제외 대상

- 휴·폐업중인 기업
- ㅇ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
-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 사업과 관련하여 제재중인 기업(사업 참여제한 등)

□ 유의사항

- 전체 지원결정 건에 대해 원가적정성 검토(원가계산) 실시
- 원가검토 결과 산출원가와 공급기업 견적서가 상이한 경우,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협약 변경을 실시함에 유의
- 기업 자체자금을 선 활용하는 긴급AS의 경우, 추후 협약체결 기준 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한 비용은 지원(반환)하지 않음
- 선정 통보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 수행계획서 제출 및 사업에 착수 하여야 하며, 관련서류 제출 지연 등으로 인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에 유의
-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세부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, 해당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 신청자(기업)에 귀속됨에 유의

6. 지역별 문의처

기관명	지역	연락처
	서울지역본부	02-2106-7455
	인천지역본부	032-837-7031
	경기지역본부	031-260-4931
	강원지역본부	033-269-6940
	충북지역본부	043-230-6815
	대전지역본부	042-281-3746
	세종지역본부	044-860-8307
	충남지역본부	041-589-4576
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	대구지역본부	053-656-8176
	경북지역본부	054-440-5923
	울산지역본부	052-703-1127
	부산지역본부	051-630-7430
	경남지역본부	055-270-9769
	전북지역본부	063-210-6465
	광주지역본부	062-600-3037
	전남지역본부	061-280-8035
	제주지역본부	064-754-5154